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

1. 제안이유

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심사 시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에 참여하는데 심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‘위원회 위원이 출장대상자로 포함된 경우 당해 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출장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의원 중 의장의 추천으로 위원을 선임 구성한다’를 삭제함.

3. 검토의견

이번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중 제 4조 2항의 “위원회 위원이 출장대상자로 포함된 경우 당해 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출장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의원 중 의장이 추천으로 위원을 선임 구성한다”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